

행 정 안 전 부

주의요구

제 목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승인 절차 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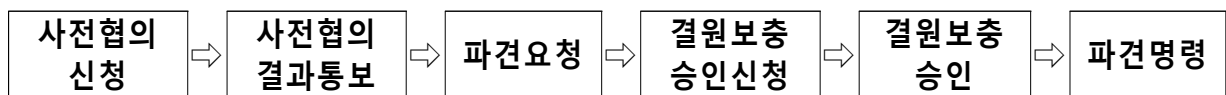
기 관 명 울산광역시, 울산 중구, 울산 남구, 울산 동구, 울산 북구, 울산 울주군

내 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파견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여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되,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충에 대한 승인권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매년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하는 '조직관리지침'에서는 직무파견에 대한 결원보충 승인을 받은 이후 파견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년~)

< 결원보충 승인절차(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 >



그러나 감사대상 기간 중('22년~현재) 울산광역시의 결원보충 승인 현황을 확인한 결과, 파견명령을 한 이후 사후적으로 결원보충을 승인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므로 조직관리지침에 따른 결원보충 업무처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 불임)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장, 울산 중구청장, 울산 남구청장, 울산 동구청장, 울산 북구청장, 울주군수께서는

직무파견 및 결원보충 제도 운영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붙임】

< 결원보충 승인절차 부적정 사례 >

자치단체	파견기관	원소속	직급	파견기간		결원보충 승인일	파견명령일 (인사명령일)
				부터	까지		
울산	행정안전부(선거의회자치법규과)	울산 총무과	행정5급	2022-01-01	2022-12-31	2021-12-30	2021-12-29
울산	국민권익위원회(심사기획과)	울산 총무과	행정5급	2022-01-01	2022-12-31	2021-12-30	2021-12-29
울산	울산일자리재단	울산 일자리경제과	행정5급	2022-01-01	2022-12-31	2021-12-30	2021-12-29
울산	부울경특별지자체합동추진단	울산 정책기획관	행정4급	2022-07-07	2023-07-06	2022-07-07	2022-07-06
울산	부울경특별지자체합동추진단	울산 정책기획관	행정5급	2022-07-07	2023-07-06	2022-07-07	2022-07-06
울산	부울경특별지자체합동추진단	울산 정책기획관	행정5급	2022-07-07	2023-07-06	2022-07-07	2022-07-06
울산	부울경특별지자체합동추진단	울산 정책기획관	행정6급	2022-07-07	2023-07-06	2022-07-07	2022-07-06
울산	부울경특별지자체합동추진단	울산 정책기획관	행정6급	2022-07-07	2023-07-06	2022-07-07	2022-07-06
울산	부울경특별지자체합동추진단	울산 정책기획관	공업6급	2022-07-07	2023-07-06	2022-07-07	2022-07-06
울산	부울경특별지자체합동추진단	울산 정책기획관	행정7급	2022-07-07	2023-07-06	2022-07-07	2022-07-06
울산	부울경특별지자체합동추진단	울산 정책기획관	행정7급	2022-07-07	2023-07-06	2022-07-07	2022-07-06
울산	국토교통부(철도투자개발과)	울산 광역교통과	행정5급	2022-09-13	2023-09-12	2022-09-08	2022-09-06
울산동구	인사혁신처(시험출제과)	울산 동구 교통행정과	행정7급	2023-01-12	2025-01-11	2023-01-12	2023-01-09
울산동구	울산광역시 세정담당관	울산 동구 세무1과	세무6급	2023-01-12	2024-01-11	2023-01-12	2023-01-09
울산북구	울산광역시 세정담당관	울산 북구 세무1과	세무6급	2023-01-12	2024-01-11	2023-01-12	2023-01-10
울산울주군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울산 울주군 환경자원과	환경7급	2023-01-12	2024-01-11	2023-01-16	2023-01-12
울산북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울산 북구 주민자치과	세무6급	2023-01-12	2024-01-11	2023-01-12	2023-01-10
울산중구	지방공기업평가원	울산 중구 성안동	행정6급	2023-07-13	2024-07-12	2023-07-12	2023-07-11
울산중구	울산광역시 세정담당관	울산 중구 세정담당관	세무6급	2025-01-08	2026-01-07	2025-01-07	2025-01-06
울산남구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울산 남구 총무과	행정6급	2025-01-08	2026-01-07	2025-01-07	2025-01-06
울산남구	행정안전부(제주4.3사건처리과)	울산 남구 총무과	행정6급	2025-02-13	2026-02-12	2025-01-07	2025-01-06
울산동구	울산광역시 세정담당관	울산 동구 세무2과	세무6급	2025-01-08	2026-01-07	2025-01-07	2025-01-03
울산북구	울산광역시 세정담당관	울산 북구 세무2과	세무6급	2025-01-08	2026-01-07	2025-01-06	2025-01-03

행 정 안 전 부

시정요구

제 목 정원을 초과한 부서 인력운영 부적정

기 관 명 울산광역시, 울산 남구, 울산 동구

내 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규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책정된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수 있도록 정원 관리 및 인사 운용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일(25.11.7.) 현재 울산광역시 및 관할 구·군의 부서별 정·현원을 점검한 결과, 아래와 같이 정원을 초과하여 현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므로 적절한 조치가 요구된다.

< 부서별 정원 초과 인력운영 사례 >

자치단체	실·국	부서	정원(명)	현원(명)	비고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	38	40	
울산남구	문화관광국	관광과	15	17	
울산동구	행정지원국	총무과	24	26	
	해양환경국	자원순환과	22	24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장, 울산 남구청장, 울산 동구청장께서는

부서별 인력이 정원 범위 내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행 정 안 전 부

개선권고

제 목 인력운용계획 및 기구·정원 현황 지방의회 제출 및 보고 미흡

기 관 명 울산광역시, 울산 중구, 울산 남구, 울산 동구, 울산 북구, 울산 울주군

내 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동 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인력운용계획을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인력운용의 안정성·예측가능성을 제고 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같은 규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준인건비 집행 현황 등 기구와 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 대상·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5항은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19년)을 통해 기구 및 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매년 12월)토록 하여 지방 자치단체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하여 조직을 운영토록 안내한 바 있다.

❖ 지방의회 의무 제출사항 (「기구정원 규정」 제40조 및 '19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편집) 등)

- ① 인력 재배치·효율화 계획 ② 기구·정원 현황 및 증설 내역 ③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현황(초과운영 시 사유 첨부) ④ 행정안전부 조직진단 및 감사 결과, 자치단체 자체진단 결과 ⑤ 한시기구·한시정원 현황 ⑥ 전문임기제 운영 현황 ⑦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⑧ 중기기본 인력계획 ⑨ 자문기관 운영 현황

그러나 울산광역시 및 관할 구·군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 결과, 최근 3년간 기구정원 운영현황 및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지 않거나 당해연도 제출 사항을 상당기간 경과 후 제출하는 등 일부 분야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 되었다. (위반사항 : 붙임)

이에 울산광역시 및 관할 구·군은 규정과 지침에 따라 관련 자료 작성 및 지방의회 제출·보고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장, 울산 중구청장, 울산 남구청장, 울산 동구청장, 울산 북구청장,
울산 울주군수께서는

집행부와 의회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조직 및 인력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운영계획 및 기구·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내실있게 작성, 지방의회에 제출 및
보고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권고)

【붙임】

< 기구 및 정원 관리·운영 현황 지방의회 제출 및 보고 현황 >

구 분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①인력 재배치·효율화 계획	'21.12.22. '22.12.20. '23.12.27. '24.12.31.	'21.12.31. '22.12.29. '23.12.29. '25.10.2.	'21.12.30. '22 미제출 '23 미제출 '24.12.30.	'21.12.22. '22.12.29. '23.12.29. '24.12.27.	'21.12.23. '22.12.27. '23.12.29. '24.12.30.	'21.12.31. '22 미제출 '23.12.28. '24.12.27.
②기구·정원 현황 및 증설 내역	'21.12.22. '22.12.20. '23.12.27. '24.12.31.	'21.12.31. '22.12.29. '23.12.29. '25.10.2.	'21.12.30. '22 미제출 '23 미제출 '24.12.30.	'21.12.22. '22.12.29. '23.12.29. '24.12.27.	'21.12.23. '22.12.27. '23.12.29. '24.12.30.	'21.12.31. '22 미제출 '23.12.28. '24.12.27.
③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현황 (초과운영 시 사유 첨부)	'21.12.22. '22.12.20. '23.12.27. '24.12.31.	'21.12.31. '22.12.29. '23.12.29. '24.12.2.	'21.12.30. '22 미제출 '23 미제출 '24.12.30.	'21.12.22. '22.12.29. '23.12.29. '24.12.27.	'21.12.23. '22.12.27. '23.12.29. '24.12.30.	'21.12.31. '22 미제출 '23.12.28. '24.12.27.
④행정안전부 조직진단 및 감사 결과 자체진단 자체진단 결과	'21.12.22. '22.12.20. '23.12.27. '24.12.31.	'21.12.31. '22.12.29. '23.12.29. '25.10.2.	'21.12.30. '22 미제출 '23 미제출 '24.12.30.	'21.12.22. '22.12.29. '23.12.29. '24.12.27.	'21.12.23. '22.12.27. '23.12.29. '24.12.30.	'21.12.31. '22 미제출 '23.12.28. '24.12.27.

구 분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⑤ 한시기구·한시정원 현황	'21 해당없음 '22.12.20. '23.12.27. '24.12.31.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1.12.31. '22 미제출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⑥ 전문임기제 운영 현황	'21.12.22. '22.12.20. '23.12.27. '24.12.31.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⑦ 자물신설기구 성과 평가 결과	'21.12.22. '22.12.20. '23.12.27. '24.12.31.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⑧ 중기기본 인력계획	'21.12.24. '22.12.5. '23.12.4. '24.12.3.	'21.12.6. '22.12.8. '23.12.1. '24.12.2.	'21.11.26. '22.12.5. '23.11.27. '24.11.28.	'21.11.9. '22.11.9. '23.11.10. '24.11.8.	'21.12.20. '22.12.5. '23.12.1. '24.11.19.	'21.12.7. '22.12.6. '23.12.4. '24.11.18.
⑨ 자문기관 운영현황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	'21 해당없음 '22 미제출 '23 미제출 '24 미제출	'21 해당없음 '22.11.3. '24.3.7. '25.3.7.	'21 해당없음 '22 미제출 '23 미제출 '24 미제출	'21 해당없음 '22 미제출 '23 미제출 '24 미제출	'21 해당없음 '22 미제출 '23.12.1. '24.11.19.	'21 해당없음 '22 미제출 '23 미제출 '24 미제출